

입 당 원 서

성 명	홍 길 동 (한자: 洪吉童)	생년월일	1990. 01. 01
연락처	010-1234-5678	당원자격 제한 여부	v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v 「정당법」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
주소	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23, 101동 1004호 (서교동, 마포아파트)		

본인은 건너가는 사람들 서울시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.

2026 년 07 월 08 일

신청인 홍 길 동 (서명 또는 날인)

홍길동

건너가는 사람들 서울시당 귀중

- 1)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16세 이상(18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)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나, 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.
2) 「정당법」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.

법정대리인 동의서

상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 정당의 입당신청(「정당법」제23조제1항)에 대해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법정대리인

(서명 또는 날인)

법정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관계

<유의사항>

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·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「정당법」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서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